

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 10. 7 선고 2020나1459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 10. 7 선고 2020나14591 판결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. 11. 26 선고 2020가합1987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, 담당변호사 이중섭

피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진

변론종결 2021. 9. 9.

판결선고 2021. 10. 7.

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. 11. 26. 선고 2020가합1987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/2 지분에 관하여 2019. 11. 13. 체결된 매매계약을 138,557,30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38,557,3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의 “원고에게”를 “B에게”로 고치고,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은 부동산 912,170,740원, 채권 1,070,593,435원 합계 1,982,764,175원으로서 소극재산 969,948,169원1) 을 초과하였으므로,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,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,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(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), 피고가 주장하는 B의 채권들은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이를 B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하기 어렵다. 한편,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의

채권 중 AK회사에 대한 기성금채권 281,698,000원, AL회사에 대한 기성금채권 49,830,435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, 위 각 채권은 그러한 점에서도 이를 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2).

결국, 피고가 주장하는 B의 적극재산 중 인정되는 부분은 부동산 912,170,740원으로서 피고가 B의 소극재산액이라고 주장하는 969,948,169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,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남양우, 판사 박규도, 판사 김윤석

별지

1) 다만, 피고의 2021. 9. 3.자 준비서면 제4~5면의 표에서 정리한 B의 채무 중 AH에 대한 140,000,000원 지급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합계액은 1,129,948,169원인바, 피고가 계산한 위 969,948,169원에는 계산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2) 피고의 2021. 9. 3.자 준비서면 제4면 참조.